

제26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2025. 10. 20.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614호로 2025년 10월 2일 이규선 의원 외 6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10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동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쉼터의 설치·운영 (안 제4조)

라. 위탁 (안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등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입법예고(2025.10.2.~2025.10.15.)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안은 휴게공간이 없어 불편한 이동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됨.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	제 명	내 용
제1조	목적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
제2조	정의	이동노동자, 이동노동자 쉼터의 용어 정의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와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한 시책 개발 의무
제4조	쉼터의 설치·운영	쉼터의 기능 - 휴식, 소통공간 - 취업상담 등 일자리, 복지서비스 제공 - 문화, 교육 등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 안전 및 냉난방 관련 물품 지원
제5조	위탁	쉼터의 관리운영 민간위탁 가능 - 「영등포구 민간위탁 관리조례」따름

-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서는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각각 규정하고,
- 안 제4조에서는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증진을 위한 쉼터 조성 근거를 명시하며 그 쉼터의 기능으로 휴식 및 안전망 확보, 복지서비스 확대, 건강 보호 등을 열거함.
- 안 제5조는 필요시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운영 가능함을 규정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수립하였음.

○ 검토 결과

- 2022년 8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¹⁾가 신설됨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그 대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²⁾으로 정하였음.
- 그러나 배달 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과 같은 이동노동자들은 직업의 특성상 업무 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마땅한 휴식 공간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 조례를 통해 상위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입법 타당성이 인정됨.
- 아울러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³⁾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1)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따른다)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

가. 전화 상담원

나.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다.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종사자

라. 텔레마케터

마. 배달원

바. 청소 관련 종사자

사. 아파트 경비원

아. 그 외 건물 관리원 중 건물 경비원

3)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노동조합(지부·분회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산의 지원 근거도 함께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에서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여겨짐.

- 우리 구(區)는 현재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1층에 휴게 공간을 조성(개소일: '23.9.27.)하여 편의용품(마사지기, 혈압기, 냉·난방기, 냉장고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추후 2개소를 신규 조성하여 확대 운영할 예정임.

【영등포구 이동노동자 쉼터】

- 위 치: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3길 24, 1층(노동자종합지원센터 1층)
- 규 모: (쉼터) 19.36㎡/ (개방공간 포함) 114.2㎡
- 근무시간: 평일 10시 ~ 21시
- 근무인력: 2명(주·야간 기간제 근로자 각 1명)
- 이용대상: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기사, 학습지교사, 가스검침원, 돌봄종사자 등 이동노동자
- 주요기능
 - 주·야간 이동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 정보공유, 자조모임 공간 운영
 - 이동노동자를 위한 안전교육, 힐링프로그램, 노동상담 등 진행

- 현재 쉼터의 운영 시간은 배달노동자, 택배기사 등과 같은 이동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평일 10시부터 21시까지이며 운영 인력은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바, 향후 쉼터의 신규 조성과 장기 지속 운영을 고려한다면 본 조례안에 민간위탁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사업주·노동조합·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짐.

- 또한 지난 제260회 임시회에서 배달 노동자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지원 근거를 「영등포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에 신설하였으며,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그 재원을 마련한 바, 본 제정 조례안을 통하여 해당 산업 노동자들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것으로 여겨짐.

참 고 자 료

1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노동조합(지부·분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사업주·노동조합·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따른다)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
 - 가. 전화 상담원
 - 나.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 다.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종사자
 - 라. 텔레마케터
 - 마. 배달원
 - 바. 청소 관련 종사자
 - 사. 아파트 경비원
 - 아. 그 외 건물 관리원 중 건물 경비원